읽을거리 13-1 항공시장과 시장원리

Reading Material

2017년 4월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사가 초과예약으로 좌석 네 자리가 모자라는데 자발적 포기자가 없자 승객 4명을 골라 강제로 기내에서 끌어내림으로써 전세계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항공시장에 초과예약(overbooking)은 일종의 관행이다. 예약을 해 놓고 나타나지 않는 손님들이 적어도 한두 명씩 나오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예약한 손님이 모두 나타나는 경우엔 보상액을 제시하여 자발적으로 탑승을 포기하는 승객이 나오도록 유도한다. 초과예약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제시하는 보상액을 차츰 높여 나간다. 유나이티드는 1,000달러를 불러도 자발적 포기자가 없자 강제로 승객을 끌어내리는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런 '갑질' 행위로 항공사의 이미지가 나빠지고 브랜드 가치가 크게 떨어졌다.

항공시장은 다른 어느 시장보다 등급간 가격 차이가 심한 시장이다. 항공요금이 가장 싼 등급이 이코노미 클라스다. 그 다음이 비즈니스 클라스, 가장 비싼 게 퍼스트 클라스다. 비즈니스 클라스는 이코노미 클라스의 2~3배, 퍼스트 클라스는 다시 비즈니스클라스의 2~3배다. 예컨대 서울에서 뉴욕을 오가는 요금이 이코노미가 500달러라면 비즈니스 클라스는 1,200달러, 퍼스트 클라스는 3,000달러인 것이다. 똑같은 여행지를 가는 여행서비스인데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난다는 점에서 가격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등급간 승객이 차지하는 면적과 쾌적도, 서비스가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비용으로 가격이 달라야' 하는 가격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항공사의 등급간 심한 가격 차이는 가격차별과 서비스의 질적 차별이 혼합된 경우이다. 그야말로 돈이 말해주는 곳이 항공여행이다. 어쨌든 일반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엄청난 등급별 가격 차이를 관행으로 운영하는 항공사가 초과예약 문제도 돈으로 해결했으면 되는 일이었다. 보상액을 1,100달러, 1,200달러로 계속 올려 자발적 포기자가 나올 때까지 좌석 '경매'를 부치는 것이다. 미국 교통부가 권고한 최고 보상액은 1,350달러다.

미국 항공업계는 델타, 아메리칸, 유나이티드 등 소수의 대형 항공사가 시장을 지배하는 과점 구조다. 이런 불완전경쟁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이 고객을 무시하고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행위를 낳은 것이다. 자유로운 선택이 중요하며 자유로운 선택을 무시하는 강제나 폭력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적인 시장원리의 하나이다. 이 기본적인 시장원리는 경쟁시장은 물론 독과점시장에도 적용되고 자본주의경제 전반에 통용되는 원리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 1위 항공사인 델타는 자발적 하차 승객이 받게 될 보상금을 최대 9,950달러로 대폭 올렸다.

참조 : 황인혁, 시장원리 무시한 유나이티드 항공, 매일경제, 2017.04.18.

읽을거리 13-4 지주회사라는 것

Reading Material

식당을 운영하는 경영주가 장사가 잘돼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아마도 더 많은 손님을 받기 위해 식당을 넓히고 더 많은 종업원을 고용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2호점을 새로 열고, 또 한식뿐만 아니라 일식, 양식당을 추가로 열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별도 사업 운영하면 사업지주사, 주식 보유만 하면 순수지주사

이처럼 회사도 성장하다 보면 처음 창업 당시의 사업 이외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겨서 직접 투자를 늘리는 경우도 있고, 다른 회사들을 인수·합병해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사의 규모가 크지 않을 땐 이런 다양한 사업을 하나의 회사 내에 여러 개의 사업부로 두고 운영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업 범위가 넓어지고, 사업 간의 독립성이 중요해지는 경우는 사업부들을 별도 회사로 분리시켜 자율적인 경영을 도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독립된 회사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를 지주회사(Holding Company)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그 회사의 사업을 지배하는 회사를 지칭합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제2조 2에서도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 회사의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순수) 지주회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회사가 모회사에 지급하는 배당금, 브랜드 명칭 사용료(로열티) 등이 주된 수입원이 됩니다.

지주회사는 사업부별 성과 평가에 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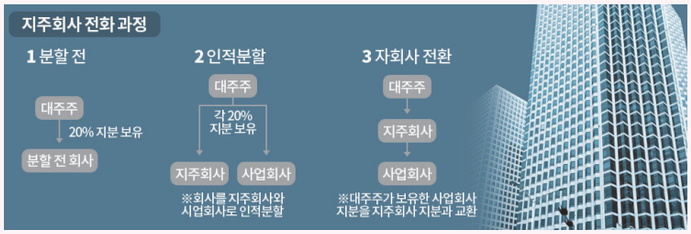

지주회사로 재편하는 데에는 다양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전략적 경영 기능과 사업 기능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구글이 인공지능, 무인 자동차 등 점차 사업 영역을 확대하면서 이를 구글이란 단일 회사 내에서 수행하기가 어렵게 되자 알파벳이라는 지주회사를 설립한 것은 이런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구글은 알파벳의 가장 큰 자회사가 되고, 나머지 신규 사업부들도 각기 독립적인 자회사로 재편됐습니다.

지주회사 체제의 또 다른 장점은 각 사업부 담당 경영진의 실적 평가가 쉽다는 것입니다. 사업부 체제로 있을 땐 각 사업부의 실적을 객관적 지표로 평가하기 어려운데, 별도의 자회사로 떼어 놓으면 해당 자회사의 재무제표를 통해 자회사 경영진의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실적에 근거해 보너스 지급 등 좀 더 효과적인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가전회사인 제네럴 일렉트릭(GE)도 지주회사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GE는 우리가 익숙한 가전제품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는 각각 독립적인 자회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지주회사 체제 선호

지주회사는 크게 사업지주회사와 순수지주회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업지주회사는 별도로 자체적인 사업을 영위하면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입니다. 예전에 에버랜드는 놀이동산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면서 동시에 삼성생명의 지분을 상당 부분 보유했는데, 이는 사업지주회사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순수지주회사는 다른 사업은 하지 않고 다른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홀딩스' 또는 'ㅇㅇ지주회사'라는 회사명을 가진 회사들은 대부분 순수지주회사로 볼 수 있습니다.

순수지주회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책은 그동안 계속 변해왔습니다. 1987년 공정거래법 1차 개정 때는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의 일환으로 순수지주회사의 설립을 금지했습니다. 지주회사를 통해 경제력집중 현상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지주회사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1997년 외환 위기를 거치면서 바뀌었습니다. 지주회사가 기존의 다단계 출자 또는 순환 출자 구조에 비해 비교적 단순하고 투명한 형태라고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1999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순수지주회사의 설립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정책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제도 변경에 따라 2000년대 들어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기업집단들이 점차 늘어나게 됐고, 현재는 LG·SK·두산·CJ를 비롯한 상당수 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를 갖췄습니다.

미국은 대부분 100% 자회사, 한국은 지분 20% 넘으면 돼

현행법상 자산 총액이 1000억원 이상이면서 총자산의 50% 이상을 자회사의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로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주회사가 할 수 없는 행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것입니다. 지주회사가 빚을 내서 다른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또 자회사에 대해서 일정 비율 이상(상장 자회사는 20%, 비상장 자회사는 40%)의 지분을 보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순환·수평 출자 금지, 손자회사 이상 다단계 출자 금지 등의 규제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GE·구글 같은 미국의 지주회사 체제와 LG·SK·두산·CJ 같은 한국의 지주회사 체제 간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대부분 100%입니다. 이에 따라 자회사들은 모두 비상장이고 지주회사만 주식시장에 상장돼 거래됩니다.

반면 한국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최소한 20%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100% 자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지주회사의 자회사이지만 별도의 상장 회사로 존재하면서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한국형 지주회사는 미국식 지주회사보다는 오히려 다단계 출자 구조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큰 문제는 각 상장 자회사의 주주 간에 있을 수 있는 이해관계의 상충입니다.

예컨대 지배 주주 일가의 지분이 상대적으로 많은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 간에 거래가 있을 경우 혹시라도 정당하지 않은 가격에 거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미국과 비슷한 지주회사가 있는데, 바로 금융지주회사입니다.

지주회사 전환, 어떤 과정 거치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주회사는 2단계 과정을 거쳐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1단계는 기존 회사에서 지주회사가 될 회사(A)와 사업을 직접 하는 자회사가 될 회사(B)를 인적 분할하는 것입니다. 2단계는 A사가 B사의 지분을 공개 매수해 자회사로 만들면 A사는 지주회사가 되는 겁니다.

우선 '인적 분할'이란 법률상 '합병'의 정반대 개념입니다. 하나의 회사를 A, B 두 회사로 나눠 별개의 회사를 만듭니다. 그런데 주주 구성은 똑같습니다. 예컨대 기존 회사 주식 100주를 갖고 있던 주주는 A사 주식 100주, B 사 주식 100주를 갖게 됩니다.

그 다음은 지주회사가 될 A사가 B사를 자회사로 만들기 위해 B사 주식을 공개적으로 매수합니다. B사 주주들이 지분을 넘기면 A사 신주(新株)로 교환해 주겠다고 하지요. 이때 일반 주주들은 공개 매수에 잘 응하지 않고, 지배 주주 일가만 적극적으로 응합니다. 왜냐하면 통상 우리나라에선 공개 매수 시점까지 자회사가 될 회사(B사)의 주가는 오르고 지주회사가 될 회사(A사)의 주가는 하락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주주들은 지배 주주가 어떻게든 싸게 사려는 지주회사 주식보다는 사업으로 돈을 벌 회사의 주식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추정됩니다. 상대적으로 비싼 자회사 주식을 상대적으로 싼 지주회사의 주식으로 교환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배 주주 일가는 지주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평균 2배 정도 증가시킵니다. 대신 사업 자회사의 지분은 거의 포기합니다.

지배 주주는 늘어난 지주회사 지분의 절반쯤을 향후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상속세로 납부해도 기존의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회사 전환은 승계를 염두에 둔 기업집단에서 일어난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김우진(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재벌들이 지주회사 설립하는 이유', 조선닷컴, 2016.12.

현대경제학원론5편QR.indd 5 2018-02-26 오후 5:25:27

부록 조세 부과를 통한 독과점규제

독과점을 규제하는 한 방법으로 독과점기업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세금은 기업에게 비용이 되기 때문에 조세정책을 쓸 경우 독과점가격이 상승하고 독과점이윤이 감소하는 등 독과점시장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아래에서는 독점기업의 이윤에 부과하는 소득세(법인세)와 독점상품에 부과하는 소비세가 어떻게 다른 효과를 나타내는가를 분석한다.

먼저 그림 13-6(a)로 법인세의 경우를 살펴보자. 상품 X를 생산하는 독점기업은 최초에 $MC_0=MR$인 생산량 X_0를 P_0의 가격으로 공급하여 □P_0BFG만큼의 독점이윤을 얻고 있다. 이제 이 독점기업에 법인세가 부과된다고 하자. 이윤에 대하여 일정비율로 부과하는 법인세는 고정비용이 증가한 것처럼 한계비용을 변동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고정비용의 성격인 법인세가 부과될 경우 기업의 한계비용은 변하지 않고 평균비용만 AC_0에서 AC_1으로 상승하게 된다. 한계비용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윤을 극대로 하는 가격과 생산량은 종전수준과 같다. 그 결과 독점이윤이 □P_0BFG에서 □P_0BJH로 감소한다. 즉 법인세는 독점이윤만을 감소시킬 뿐 독점가격과 독점생산량은 변화시키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을 교란시키지 않으면서 독과점기업의 초과이윤의 일부를 회수하고자 할 때는 법인세를 부과하면 된다.

이번에는 그림 (b)로 소비세를 부과하는 경우를 분석해 보자. 소비세는 생산량에 따라 증감하기 때문에 가변비용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종량세의 형태로 소비세가 부과될 경우 기업의 평균비용이 AC_0에서 AC_1으로 상승함은 물론 한계비용도 MC_0에서 MC_1으로 상승한다.[1] 그 결과 가격은 P_0에서 P_1으로 오르고, 생산량은 X_0에서 X_1으로 감소하며, 독점이윤은 □P_0BFG에서 □P_1JRH로 감소한다. 독점이윤만 감소시키는 법인세와는 달리 소비세는 독점이윤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독점가격을 상승시키고 독점공급량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독점이윤을 감소시키고 독점상품에 대한 소비를 억제시킬 필요가 있을 때 소비세를 부과하면 된다. 예컨대 독점상품이 사치품일 경우 소비세를 부과하면 독점이윤이 감소함은 물론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소비가 억제되는 것이다. 반면에 독점상품이 생활필수품일 경우 법인세를 부과하면 가격을 오르게 하지 않으면서 독점이윤만 감소시킨다.

---

1 소비세가 가격에 관계 없이 판매되는 상품 한 단위에 일정액으로 부과되는 종량세라 하고 과세 전의 총비용이 TC라 하자. 그러면 과세 후의 총비용은 $TC+t\cdot X$가 된다. 여기서 t는 상품 1단위에 부과되는 세금액이므로 AC곡선과 MC곡선 모두 t만큼 위로 이동한다. 그 이유는 $TC+t\cdot X$를 X로 나누면 $AC+t$가 되고 $(\Delta TC+t\cdot\Delta X)/\Delta X$는 $MC+t$가 되기 때문이다.

그림 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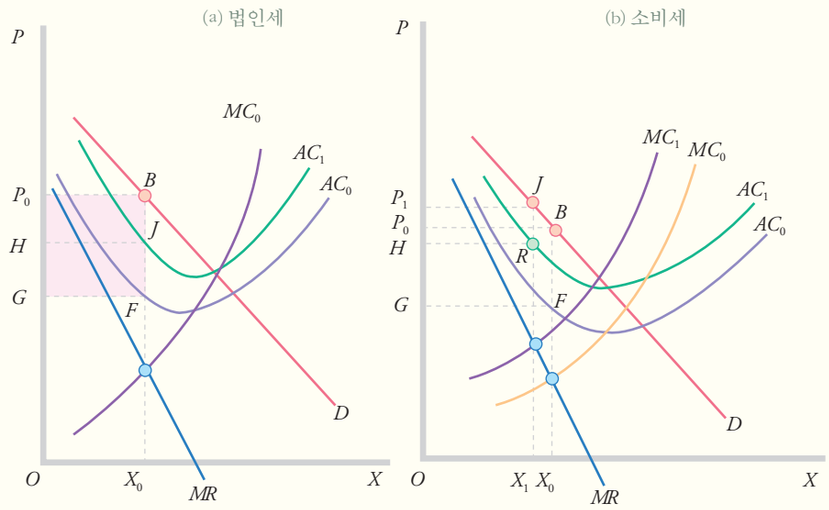

법인세와 소비세의 독점규제 효과

독과점기업의 이윤에 매기는 법인세는 제품 생산량과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윤만을 축소시킨다. 그러나 제품에 매기는 소비세는 가격을 상승시키고 생산량을 감소시킨다.

21세기 들어 자원배분을 왜곡시지키 않는 법인세의 세율을 주요국이 서로 낮추는 경쟁이 일고 있다. 이를 조세전쟁(tax war)이라고 한다. 조세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세계화시대에 다국적기업들이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로 쉽게 옮겨 가기 때문이다.